

[] 영업허가증
[] 영업신고증
[] 영업등록증
[]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

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대표자		생년월일	
	주소			
	명칭			
	소재지			
	업종명			
재발급 사유 (별첨 가능)				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또는 제8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, 제42조제11항,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,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,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 (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)	수수료	
		전자민원	방문·우편민원
		2,000원	5,300원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